

코펜하겐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윤리적 측면

도널드 브라운(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I 서론

2012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 대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 모인다. 이 글에서는 국가들이 자신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검토한다. 우선,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코펜하겐의 협상 쟁점들이 왜 윤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코펜하겐 협상 의제 중 가장 시급하게 윤리적 검토와 이해 및 다짐을 요청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윤리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II 왜 기후변화는 윤리적인 문제인가?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재앙이 되며, 기존 정부는 종래 그들의 관점을 극복하고 윤리적 책임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 등 때문이다.

A. 원인과 결과, 피해와 혜택의 분리

일부 전지구적 환경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공간적,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후변화 과학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소비가 아프리카, 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섬들에게는 죽음과 질병을 야기하는 부분적 원인임을 알고 있다. 게다가 지구적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대부분 환경 문제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다. 기후변화는 지구 환경 문제의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GHG)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난한 국가들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가 생긴다. 다양한 윤리학 이론들이 식물, 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책임에 관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윤리 체계가 엄격히 금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윤리적 책임이 야기되지만, 이렇듯 기후변화 유발자와 희생자 사이의 공간적, 시간적 분리,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분리는 윤리적 추론상 몇 가지 시사점으로 바로 연결된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윤리상 직관적 책임감은 피해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일 때에는 촉발되기 어렵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시간, 공간, 문화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누군가 야기하는 실제적 피해가 지구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원인 제공자는 그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쉽다. 예를 들어, 여름에 농사를 위해 빙하의 물을 이용하거나 상류 지형의 특성상 홍수의 영향을 받는 마을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특정 취약성은 지역별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유발된 기후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당사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취약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야기한 기후변화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시각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윤리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명백히 금지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일 윤리적 책임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고통을 담은 사진을 보고도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야기하는 타인의 고통이 연관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환경 전문가들이 특정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근거로서 흔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의존하는데, 이는 또 다른 윤리 문제를 야기한다. 어떤 행위가 한 행위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행위자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을 경우, 이 분석도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용가능한 행위에 관한 지침으로서 비용편익 분석은 일부 환경 문제에는 적용 가능하다(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한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논의는 Brown 2009a를 참고). 예를 들어, 정부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편익을 측정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해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 그 문제가 에너지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 사용에서 오는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 환경 파괴로 인한 이해관계의 정당화는, 적어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려면,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동일한 이해관계 공동체일 경우에만 말이 된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특히 공간과 시간상에서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는 기후변화의 경우에 비용편익 정당화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B. 기후변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과 같다.

기후변화가 윤리적 문제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인명과 건강과 지속적인 삶을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물과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그 피해는 질병, 가뭄, 홍수, 태풍에 의한 사망, 해수면 상승, 강력한 태풍, 농업에 대한 악영향, 천연자원의 감소에 의한 사회적 논쟁, 질병의 다양화, 전통적인 식량 부족, 급수 부족, 삶의 터전의 상실 등의 어려움을 포함한다. 게다가 작은 섬나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

승에 따라 그 존재가 위협받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기후변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책임은 흔히 해당 행위가 야기한 피해의 양에 비례한다.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앞으로 수 억 명의 사람을 위협할 것이라는 증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벌써 일 년에 30만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며 전 세계의 3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세계환경포럼, 2009). 이 보고서는 심각한 홍수, 흉수, 폭풍과 산불의 증가로 2030년까지 500,000명의 사망자가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가 직면할 가장 큰 인간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25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원조 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때문에 연간 6,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 문제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C. 각 국 정부는 세계 환경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는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또는 국가적 단위에서 국민은 그들의 정부가 심대한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것으로 믿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의 환경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국가나 지방 정부가 자신의 경계 내에서 시민을 심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울타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윤리적 의무감을 갖고 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국 국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윤리적 함의를 가지는 코펜하겐 협상 의제

다가오는 코펜하겐 협상 의제는 심각한 윤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많은 중요한 쟁점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A. 전세계 대기 온실가스 농도 목표
- B. 국가별 배출량 목표
- C. 선진국의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재정 지원 책임

A. 전세계 대기 온실가스 농도 목표

코펜하겐 회담의 이슈 중 하나는 장기적인 대기 온실가스 배출 농도의 안정화 목표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은 온도 변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기온은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에 따라 증가하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집단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이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 1992)

국가들은 또한 다음에 합의했다.

형평에 입각하고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인 당사자는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조, 1992).

이처럼 정부들은 “형평”과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을 기초로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시간, 다시 말해서 대기 온실가스 농도를 안전한 수준 밑으로 내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과학자들은 “위험”한 것으로 널리 간주되는 수준인 지구 기온 2°C의 인위적 상승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 주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대기 중 CO₂ 농도를 450ppm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위험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로 Baer and Athansiou, 2008 참조). 하지만 CO₂를 450ppm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격적이고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전세계가 추가적인 온난화를 2°C로 제한해야만 한다는 결론은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의 연구에서 도출된 것이다.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는 2°C 이상 온난화될 경우 많은 위험한 기후변화 영향의 발생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비록 2°C라는 위험한 온난화 기준치가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2°C로 정의한 적이 전혀 없다. 위원회는 사실 아주 적절하게도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는 윤리적 문제이지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무엇이 위험한지는 어디서 살고 있고 얼마나 기후변화에 취약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지구 온도가 아주 조금 상승해도 일어날 약간의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 증가 등에 이미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는 세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기후변화는 그들에게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변화를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 안정화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온난화가 얼마나 일어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 과학적 불확실성에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과학 문헌에서 “기후 민감성”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라고 불린다(용인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관한 훌륭한 논의로 Baer and Athansiou, 2008 참조). 기후 민감성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심지어 CO₂ 450ppm과 같은 낮은 온실가스 농도 수준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며, 그 결과 2°C 수준을 넘길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권 온실가스 농도가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과학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점점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과학자들은 위험한 기후변화 방지가 최고로 시급한 문명의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Jim Hansen과 7명의 저자들은 기존의 절박함에 한층 더하여, 지구 온도의 추가 상승은 1°C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385ppm에서 380ppm으로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ansen et al 2008).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의 대기 농도는 이미 위험한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준을 넘었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세계는 이미 위험한 기후변화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대기권과 생물권의 동화 능력을 소모해 버린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모든 나라는 이제 자국의 배출량을 전지구적으로 안전한 배출의 공정한 할당량으로 제한해야 하는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윤리적 주장이 성립된다. 비록 온실가스 저배출 국가들이 자신은 전지구적으로 안전한 배출의 공정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장은 자신의 배출량을 감소하겠다고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앞의 윤리적 주장은 성립한다(Brown, 2009b). 즉,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의 배출량은 자신의 지구적 책임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강한 윤리적 주장을 할 수 있더라도, 모든 나라는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마치 지구적 책임보다는 국익을 기초로 한 기후변화 국가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후변화 협상에 임한다. 그런데 만약 각국에게 자국의 기후변화 정책이나 미래 기후체제를 위한 제안이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지구적 윤리 의무를 어떻게 완수하는 것인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기후변화 협상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정당화 논리와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제안은 그것이 어떻게 재앙적 기후변화를 방지할 전지구적 기후변화 전략의 구성요소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기후 변화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별 제안에 대한 논의는 Brown 2009c를 참조).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게는 자국의 제안이 어떻게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위험한” 기후변화가 윤리적 문제라면, 코펜하겐에서의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제안들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배출량 감소에 대한 양적인 대응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수준이 “위험한”지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해야 한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 농도 수준이 이미 인간과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현재 수준에서 정의된 대기 온실가스 농도 이상으로 목표를 잡는 것은, 기존의 기후 온난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윤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550ppm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같이 현재 수준보다 높은 농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처럼 높은 농도의 온실가스 기준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수준보다 높은 온실 가스 농도를 허용하는 포스트 교토 체제 제안은 절차정의 및 분배정의 관점에서 엄격한 윤리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는 윤리적이면서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높은 대기 온실가스 농도 제안자들은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윤리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높은 온실가스 농도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위험하지 않으며, 또한 높은 온실가스로 위협받는 사람들이 그런 온실가스 농도 제안에 동의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제안과 포스트 교토 체제 제안은 함축적으로 (1)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와 (2) 무엇이 “위험한” 대기 온실가스 농도인지에 관한 윤리적 정당화 제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포스트 교토 체제 제안들은 최소한 지구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도록 하고 안전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전지구적 배출량 감소 목표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포스트 교토 체제 제안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요건이다.

B.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윤리

우리들이 본 것처럼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동의하였다.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형평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검토한 바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대기 농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대기 배출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 정부, 기업, 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할당해서 전체 배출량이 안전한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가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근거한 분배의 문제이다. 형평성 있는 분배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2차 이행기간 동안 최소한 지켜야 할 두 번째 윤리적 요구사항이다.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합의에 도달하고, 또 그 협상과정에서 형평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적어도 함축

적으러라도 입장이 취해질 것이 기대된다.

형평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각 국가들은 배출 총량, 1인당 배출량, 배출 시기 등의 측면에서 전지구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아주 상이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Argawal, and Nairin 1991; Estrada-Oyeala, 1992).

또한 형평성에 따른 분배를 염두에 둘 때, 코펜하겐 회의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제안자들은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신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다면, 식량, 주거, 안전과 같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 수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Shue, 1994). 게다가 이러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수 백 년 동안 온실가스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선진국들의 온실 가스 배출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요구되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제안한 ‘형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양하다(Brown 2009c).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정의하는 모든 제안들이 실제로 윤리와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rown 2009c). 사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들 중에는 지구적 책임과는 관계 없는 자국의 이익에만 기반한 것들도 있다.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목표치의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통적인 분배정의는 공공 정책의 득실이 공정성의 개념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필요나 업적과 같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고찰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항상 완전히 동등한 분배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과 다르게 대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대우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거함을 증명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기를 사용할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형평성’의 정의를 제안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업적, 응당한 보상 또는 다른 도덕적으로 적실한 기준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할 부담을 진다.

요약하면, 포스트 교토 체제 제안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2번째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은 반드시 “형평성” 및 “정의”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C. 선진국은 적응기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현재 대기의 탄소량과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관계가 없는 많은 지역과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취약한 나라의 대다수는 위험한 기후 영향에 대한 예측 또는 대처에 대한 과학적 노하우나 기술적 인프라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에는 취약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인과응보적 정의 및 분배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절차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그들의 복지와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기금은 코펜하겐 협상의 의제로 올라 있다. 따라서, 코펜하겐 의제로 고려되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윤리적 질문은 기후변화의 피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코펜하겐에서 적응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밝혔다.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에게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지원이 논의될 것이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적응기금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혜택과 피해를 모두 공유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기금은 대단히 부족하다(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2% 징수액으로 2012년까지 약 3억 달러에 해당). 선진국들은 인과응보적 정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기금에 대한 윤리적 의무가 있다.

IV. 윤리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 정책 이해의 중요성

코펜하겐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윤리적 문제로서 고려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긴급하다.

A. 기후변화에 대한 방관 정당화의 윤리적 분석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본질적으로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기후변화 원인을 감축하지 않기 위해 종종 끌어대는 정당화 변명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많은 국가들이 지구적인 의무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묘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중지시킬 윤리적 의무가 성립한다면, 정책대안들은 반드시 이러한 의무에 호응해야만 한다. 모든 윤리적 의무의 본질은 의무가 편협한 자기이익의 고려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정하고 안전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 의무가 존재한다면, 책임소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 이 의무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윤리적으로 책임소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

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계몽된 자기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책임소지자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생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윤리적 책임을 만족시키는 근본적 기준임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구분은 엄두에 들 때, 국가의 기후변화 전략은 안전한 세계 배출량의 공정한 분배로 공평하게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때에만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펜하겐에서의 국가들의 제안에 대한 윤리적 분석은 편협한 국가적 이익에 기초한 고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B.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공감을 얻기 위해 공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모든 나라의 배출량이 대기 온실가스 농도 목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지구적 공조해법이 필요한 문제이다. 전지구적 해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 해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식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코펜하겐 체제 제안들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C. 기후변화에 대한 윤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접근법이 국제적 부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기후변화 정책이 기후변화 위협을 감소하는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빈부국 사이의 부정이 악화될 것이다. 국제질서가 이미 커다란 빈부간 격차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기후변화가 지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이 분배 및 인과응보적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세계적 불평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윤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후변화 체제만이 현존하는 부정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윤리적인 기후변화 정책은 실천적으로 긴급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기 때문에 지지해야 한다.

IV. 참고문헌

AAgarwal, Anil, and Narain, Sunita., (1991), *Global Warming in an Unequal World: A Case of Environmental Colonialism*, New Delhi: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Baer, P., and T. Athansiou, (2008), http://www.ecoequity.org/ceo/ceo_8_2.htm

Brown, D. (2009a), *Ethical Issues in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of Climate Change Programs*, <http://climateethics.org/?p=36>

Brown, D, (2009b), *Nations Must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ir Fair Share of Safe Global Emissions Without Regard To What Other Nations Do.*, <http://climateethics.org/?p=37>

Brown, D (2009c). *Minimum Ethical Criteria For All Post-Kyoto Regime Proposals: What Does Ethics Require of A Copenhagen Outcome*, <http://climateethics.org/?p=50>

Estrada-Oyuela, Raul A.,(2002). *Equity and Climate Change. Ethics, Equity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eds.LuizPinguelli-Rosaand Mohan Munasinghe.pp.36-46.Cheltenham,UK:EdwardElgar.

Global Humanitarian Forum, (2009), *The Anatomy of A Silent Crisis*,
<http://www.ghf-ge.org/index.cfm?uNewsID=157>.

Hansen. J. et al, (2008), *Target CO2*

:http://www.columbia.edu/~jeh1/2008/TargetCO2_20080407.pdf

Shue, Henry, (1994),. *After You: May Action by the Richbe Contingent Upon Action by the Poor?*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1:343-66.

United Kingdom, (2006), *Avoiding Dangerous Climate Change*,
<http://www.defra.gov.uk/environment/climatechange/research/dangerous-cc/index.htm>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 U.N. Doc. A/AC.237/18 , reprinted in 31 I.L.M. 849 (1992).